

노동자권리찾기 상담전화

| | | | |
|----------------|---------------|-----------|--------------|
| 부평공단 | 032-525-0497 | 전남서남 | 061-462-7177 |
| 남동공단 | 070-4756-0119 | 대구 성서공단 | 053-585-6200 |
| 경기 | 031-251-7095 | 포항 | 054-278-1339 |
| 안산/시흥 | 031-491-7097 | 녹산공단 | 051-941-8211 |
| 서울 | 02-2636-2148 | 창원공단 | 0899-2090 |
| 서울 구로/금천/관악/동작 | 02-867-2260 | 부산/양산 | 051-637-7433 |
| 의정부/양주/파주 | 031-866-8489 | 정관공단(동부산) | 051-727-8977 |
| 광주 | 062-453-4012 | 대전충북 | 043-236-5077 |

해지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17년 4월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02-2670-9509

2면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려면

3면 중소기업·영세·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법으로 보장하라

4-5면 최저임금 1만원, 한국 사회가 들썩인다

6면 전국은 지금 / 인천 남동공단 - 노동자 119

7면 이주노동자 칼럼 / 서울디지털단지 무료노동 신고센터

8면 대선후보 노동공약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 할 권리

4월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한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이다. 4월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추모 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건강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2008년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2009년 '청소 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 2010년 '감정노동자에게 진짜 웃음을', 2016년 '불법파견 노동자 메탄올 중독사고와 구의역 참사' 때 시민들과 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했다.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제철 등 산업재해를 식은 죽 먹듯 은폐하는 기업에 맞서 처벌강화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싸움을 전개했다.

OECD 산재사망 1위 대한민국

그러나 일터와 우리 삶 곳곳에서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하루 일곱 명, 매년 2,400 명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2016년 온라인 게임회사 넷마블에서 일하는 게임개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돌연사, 자살, 과로사 했다. 올해 2월 LG유플러스의 전주 LB휴넷 고객센터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실적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어린씩을 죽였다,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 쇳물이 끓는 제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

고 있다. 위험한 작업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외주화해 이윤을 극대화 하는 원청 자본과 대기업의 논리에 노동자들은 일회용 소모품이 되고 있다. 원청보다 하청업체 노동자 산재 사망률이 여덟 배 높다. 산재 책임 당사자인 대기업들은 산재예방, 보상, 처벌에서 빠져나가기 바쁘다. 대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폐, 축소, 보여주기 식 사죄에 바쁘다.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5%에 불과하다. 판결은 무죄가 대부분이다. '유전무죄'다. 박근혜 없는 4월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하는 사회,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찾자.

산재신청은 법이 보장한 노동자 권리입니다. (관련기사 2면)

- ▲ 산재신청 노동자 불이익 금지 : 산재보험법 개정 (2016년 12월 개정) 산재신청 노동자 해고, 불이익 주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고의 산재은폐 형사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17년 3월 국회 통과) 고의 산재은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 산재 미보고, 허위 보고 시 1,500만원 과태료, 중대재해는 3,000만원 과태료

“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동료한테 이야기 하자”

일터에서 혼자 작업을 하는 경우, 동료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지만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보통 큰 사고가 아니면 사고 사실을 동료나 상급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산재 피해자는 시일이 지나고 사고로 장기 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얼마 전 한 노동자가 동료 두 명과 보온 덮개를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했다. 두 명의 동료는 앞쪽에서 작업을 했고, 이 노동자는 화물차 뒤에서 작업했다. 이 노동자는 상차 작업 중 발이 미끄러져 화물차 뒷문에 옆구리를 부딪치는 재해를 당했다. 당시 통증은 조금 있었으나 단순 작업을 계속했다. 동료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퇴근 후 집에서 통증이 지속되어 파스와 약을 먹었다고 한다. 파스를 바르고 약을 먹어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더 심해져 월요일 출근 후에 직상급자에게 금요일에 있던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병원에 갔다. 검사를 해 보니 ‘갈비뼈 골절’로 진단을 받았다. 회사에 휴직을 하고 치료를 시작했다.

이 노동자는 일을 하다 다쳤으니 당연히 산재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의무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지 않고 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연체하고 회사가 폐업해도 노동자는 보상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4월27일 산업재해로 노동자를 죽게한 기업 명단을 발표하며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불승인 처분 이유는 사고 당일 사고 목격자가 없었고, 퇴근할 때까지 동료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한 사고를 증명할 만한 어떤 자료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 당일 병원을 가지도 않았고 월요일이 되어서야 사고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노동자는 갈비뼈 골절로 인해 일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 중에 있다.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비와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근로복지공단본부에 심사 청구를 준비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방법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

이 노동자는 사고 당시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동료나 직상급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당일 병원에 가서 반드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말을 하고, 진료기록지에 남겨 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고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처럼 몇 달간 치료를 해야 할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도 산재 처리가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정보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일 하다가 다쳤거나 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산업재해’ 혹은 ‘업무상재해’라고 한다.

노동자라면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일 때문에 다쳤거나 아프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 나흘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출근 첫날 다쳐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 실수로 다쳐도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의무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지 않고 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연체하고 회사가 폐업해도 노동자는 보상받을 수 있다.

출근 길, 퇴근 길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위험

기존 산업재해보상법은 노동자가 출퇴근을 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 제공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조항이 있었다. 2013년 까지 헌법재판소는 이 산재법을 ‘합헌’이라 결정을 내렸으나 노동계의 문제제기로 2016년 “도보, 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산재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법으로 보장하라

“최저임금 1만원으로, 공휴일 근로기준법 유급휴일로”



박근혜 파면, 이제 시작이다.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의 희망, 삶의 희망을 위한 권리의 시작이다. 대선 후보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단계 인상을 공약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당장 1만원 인상해야 한다. 4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주최한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3월29일 박근혜 퇴진과 구속, 적폐를 청산하자는 촛불로 가득 찼던 광화문광장에 ▲법정 최저임금 1만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휴일은 다 같이 쉬자 ▲연차휴가 강제사용 금지라는 팻말이 등장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본 노동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수두룩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중 최하위 최저임금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0% 수준이다. 비정규직이라 차별받고, 중소기업,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마저 차별 적용받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 보장 입법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3월,

17만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2017년 중소기업·영세·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했고, 대선을 앞두고 본격 행동을 시작했다. 광화문광장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요구안 내용을 들여다봤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한국에서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 임금 불평등이 점점 굳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저임금 7%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7.1% 인상안을 올렸다. 결국 7.1% 올랐다. 박근혜 파면, 이제 시작이다.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의 희망, 삶의 희망을 위한 권리의 시작이다. 대선 후보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단계 인상을 공약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당장 1만원 인상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만 받고 일한다. 무제한 초과노동에 시달리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와 국

가인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속 권고가 있음에도 사업주들은 외면하고 있다. 한국 노동자 네 명중 한 명이 이런 처지에 있다. 소득의 양극화와 빈곤층의 비정규직화, 노동자가 사이차별을 없애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공휴일에 모두 쉬자

“달력에 있는 빨간 날, 공무원, 공공기관, 대공장 노동자들은 휴일이다. 많은 노동자는 휴일이 아니다. 공휴일에 다 같이 쉬어야 하지만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있다. 강제로 회사가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대체해 쉬게 하는 사업장이 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가권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강제로 쓰게 한다. 빨간 날을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이다. 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가 공휴일에 쉬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한국 사회가 평등한 세상으로 한걸음 나아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노동자는 쉬고 싶어도 쉬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힘든 세상이다. 평등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은 '공휴일 유급휴일' 법 제도 지정이다. 상식과 간단한 요구들이 모이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직장의 민주주의로 확대해야 한다.



- 문1)**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용변을 보다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답1) 물론입니다. 업무수행 도중 용변 등 생리 필요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나의 부주의와 실수로 사고가 났다 해도 산재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문2)** 회사가 산재신청 해주지 않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나요?
답2)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회사가 산재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거나 협조해 주지 않아도 노동자 스스로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문3)** 회사에서 산재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적당히 받으면 괜찮을까요?
답3) 흔히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의 상승과 발주 제한 등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사고로 보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애가 남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별도 민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단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한국 사회가 들썩인다

최저임금법 1조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월급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한국 저임금 노동자 수 1천만. 한국 전체노동자의 절반에 달한다.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을 앞두고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전국행동이 시작됐다. 민주노총과 농민, 빈민, 여성, 청년학생, 학부모, 유통상인들까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언했다. 서울 도심 광장집회, 콘서트

를 비롯해 전국 순회 캠페인을 펼친다.

2017년 6월, 최저임금 1만원의 요구가 한국사회의 절정 요구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월30일, 이른바 ‘사회 총파업.’ 노동자는 파업으로, 알바청년은 하루 휴업으로, 자영업자는 철시로, 청년학생-시민사회단체 민중이 거리로 나온다.

민주주의를 열망한 광장의 1,700만 촛불에 이어, ‘최저임금 1만원 행동’이 전 사회를 들썩인다. 전국 최저임금 1만원 행동을 사진으로 담았다.



촛불후보 기호 0번 ‘최저임금 1만원’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내 삶이 바뀌어야 진짜 세상이 바뀌는 법이다. ‘최저임금 1만원’ 후보와 함께 세상을 바꾸자. 앞에서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재벌과 사업주 눈치만 보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확약하지 않는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경로와 방법을 놓고 5천만 국민 앞에서 TV 토론을 벌여보자”고 제안했다.



▲ 전북지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스마일-1만원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최저임금 1만원 온라인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인증샷 올리기 <http://2017.jeonjuc.net/>

▶ 충북지역에서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을 상정하는 ‘209 실천단’이 활동하고 있다. 청주를 비롯해 영동, 부강, 옥천 등 충북 곳곳에서 정기적인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209 실천단’은 4월20일 충북지역에서 대규모 대행진을 진행한다.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우리 결혼해요.” 만개한 봄꽃과 함께 치르는 장미 대선(5월9일). 시간당 1만원도 받지 못하는 최저시급 청년노동자들이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한다’며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벚꽃축제 거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4월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주노총이 “한국사회대개혁의 핵심의제는 빈곤과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6월30일 사회적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원행복 따로 없다. 만원행동 함께 하자.

온 국민이 촛불 들어 박근혜는 감옥 갔고
촛불 혁명 승리 했다 모두 함께 만세로다

새 빠지게 일해 봐야 한 끼 밥값 최저임금
차별대우 기본이고 파리 목숨 비정규직
노조하면 해고하는 유명무실 노동 3권
헬 조선이 따로 없네 노동자욕 그대로네

알바노동 최저임금 이것마저 아깝다고
시간깎기 임금착취 이게 정말 나라인가
보았는가 무한도전 열정페이 웬 말인가
사람 잡는 열정페이 공짜노동 너나 해라

최저임금 만원으로 생활임금 확보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재벌 배만 살찌우는 재벌독식 끝장내고
노동자면 노동조합 권리보장 당연하게

노동 없는 민주주의 이빨 빠진 호랑이다
촛불광장 주인들아 헬 조선을 타파하자
일터에서 주인 되고 우리 삶이 달라져야
이게 바로 촛불승리 후회 없는 촛불혁명

만원행동 출범했다 우리 모두 함께하자
노동자는 파업으로 알바청년 하루휴업
자영업자 철시하고 청년학생 공동행동
시민단체 민중단체 모두 함께 모여보자

촛불의 명령이다 최저임금 만원으로
촛불의 명령이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너도나도 함께하니 새 세상이 오는구나

4월5일 ‘최저임금 1만원 ·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
출범선언문 중

인천 남동공단 파견노동자 429명 중 351명 직접고용 전환

불법파견·부당해고, 지역 권리 찾기 사업단과 해결 가능

〈인천 남동공단 권리 찾기 사업단 (아래 ‘노동자 119’)〉는 2016년 12월14일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제조업체 여덟 곳을 고발했다. 여덟 곳 모두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다. 해당 회사 파견업체 노동자 429명 중 351명이 원청에 직접 고용됐다. 파견노동자를 공급한 파견업체 20곳도 처벌받았다.

파견업체 수익, 노동자에게

파견 보낸 노동자 월급이 200만원일 때 파견업체는 노동자 한 명당 매월 30만원 이상 수익을 얻는다. 파견업체 노동자 1인당 1) 수수료 2) 4대 보험료 3) 중간착취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

파견업체의 수익은 노동자 임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실업급여 등)의 권리도 박탈하는 구조다. 제조업체는 원칙 상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즉, 언제든지 해고가 자유로운 파견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버는 파견업체는 공단에서 없어져야 한다.



▲파견업체 통한 제조업체 노동 불법이므로 해고 무효 ▲연차는 노동자가 쓰고 싶을 때 쓰는 ‘휴가’이자 ‘실 권리’이므로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월급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위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적용받지 못한 노동자가 있다면 지역 권리 찾기 사업단에 신고해 상담 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자. 3월7일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노조 인천지부가 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 제기 기자회견’에서 배태민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비정규직지회장(사진 맨 오른쪽) 등 조합원들이 정규직 인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파견업체 수익 구조

- 1. 파견 수수료 5~12%**
파견 노동자가 임금을 200만원 받으면 파견업체는 원청에서 파견 노동자 1명 당 10~24만 원을받는다.
- 2. 4대 보험료 떼어먹기 (월급 200만원일 때, 약 17만원)**
파견업체는 노동자에게 ‘4대 보험 들지 말자’고 얘기하고 사용업체(원청)에겐 4대 보험료를 받아간다. 파견업체는 4대 보험료를 중간에 빼먹고 노동자는 국민연금-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 3. 중간착취**
상여금, 연차 수당, 퇴직금 등을 원청으로부터 받고 노동자에게 주지 않는다.
- 4. 버는 돈이 많으니, 로비도 관행**
원청과 노동부에 로비(상품권 등)하며 부당한 거래를 확대하기도 한다.

불법파견, 부당해고와 휴업수당 미지급까지, 권리찾기 사업단에 신고하자

현재 파견업체를 통해서 제조업체에 일하고 있다면,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일하고 있었다면, 이 신문 1면 왼쪽 상단에는 나온 각 지역별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에 신고하자. 1) 회사명 2) 파견업체명 3) 파견노동자 근무 부서 4) 파견노동자 인원수(대략

정도만 신고하면 된다. 물론, 제보자의 신분은 절대 비공개다. 경기가 나쁘다고, 회사가 어렵다고 해고됐을 때 사업단에 신고하자. 평상시 정규직과 파견직으로 기업을 운영하다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파견직 노동자를 해고 한다. 일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휴업하는 동안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기도 한다. 연차가 없는 경우 ‘월급 없이 휴업’에 들어간다.

모두 불법이다. ▲파견업체 통한 제조업체 노동 불법이므로 해고 무효 ▲연차는 노동자가 쓰고 싶을 때 쓰는 ‘휴가’이자 ‘실 권리’이므로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월급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위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적용받지 못한 노동자가 있다면 지역 권리 찾기 사업단에 신고해 상담 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자.

〈인천 남동공단 권리 찾기 사업단 ‘노동자 119’〉

인천 남동공단 권리 찾기 사업단 ‘노동자 119’

(팩스 032-506-9938, 메일 iclabor0497@gmail.com)

- 북부 : 032-525-0497, 카톡 ‘권리찾기119’
- 주안/서구 : 032-525-9938 / 카톡 ‘다바다119’
- 남동 : 070-4756-0119 / 카톡 ‘노동자119’

노동법률상담소

(팩스 032-465-1802, 메일 iclabor119@gmail.com)

- 부평 : 032-525-1802
- 남동 : 032-466-1802

농업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에서 숙식 '월 30만원'

검은 차양막을 친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 여름에 찌는 듯 덥고, 겨울에 코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이 건물에 방 2개, 주방, 샤워실이 있다. 방에 창문이 없고 샤워실에 온수가 나오지 않고 천장은 물이 새서 비만 오면 쓰레받기로 물을 퍼내야 한다. 밖에 간이 화장실이 있지만 오물을 퍼내지 않아 용변을 볼 수 없다.

6만원 짜리 숙소에 120만원 지불

캄보디아에서 온 네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장주로부터 제공받은 이 기숙사의 월세는 얼마일까? 감정평가사가 주변 시세를 고려하고 아무런 편의시설도 없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지고 시설이 열악하다며 매긴 적정 가격은 월 6만 원이었다. 사업주는 네 명의 이주노동자들로부터 1인당 30만원씩 120만원의 월세를 뜯어냈다. 이 네 사람에게 닥친 유난한 상황이 아니다. 대부분 농업 이주노동자들은 형편없는 숙소에

살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당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 농장주들은 농업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라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주 44시간, 월 226시간의 최저시급을 적용해 월 고정급을 지급해왔다. 대신 숙소비용은 따로 받지 않았고 기껏해야 전기나 수도사용료를 나눠 내라고 했다. 농장주들은 농업 노동자라도 일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나온 2009년 이후 늘어난 월급을 상쇄하기 위해 숙소비용을 받기 시작했다. 일을 많이 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달은 덩달아 숙소비도 올라가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농업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2015년 10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해 고용주의 숙박시설 제공

여부, 비용 부담 여부, 비용 금액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로 과도한 숙소비용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년이 넘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2016년 2월 고용노동부는 숙식비용 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내놨다. 내용이 기가 막힌다.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 주거시설에 비용 부과가 가능하며 숙식을 모두 제공할 경우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노동부가 숙식의 수준이 아니라 월급에서 공제할 비용의 기준을 책정하는 건 무슨 셈법일까.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고 외쳐온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농장주에게 '이 만큼은 집세를 받으셔도 된다'고 친절히 안내하는 노동부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우리는 요구한다

과로사 OUT.

“정시출근, 정시퇴근”
(연장, 야간근로이후엔) 적어도 12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업무 스케줄은 개발, 납품일정 말고 사람에게 맞춰서

무료노동 OUT.

근로기준법 준수, 무료노동 근절
무료노동, 부당하고 근절을 위한 2017 노사정 공동협약
4대 무료노동(아침, 저녁, 휴일, 휴게시간 무료노동) 근절

미지급수당 OUT.

무료노동, 체불임금 집단진정, 고발
악질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미지급 수당, 체불임금 즉각 지급

포괄임금제 OUT.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강요, 포괄임금제 퇴출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의 철저한 근로감독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소정근로시간, 임금항목, 계산방법 명시)

20만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무료노동신고센터> 02-867-2260

서울디지털단지에 만연한 무료노동, 부당하고, 체불임금, 연차사용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 노동건강 관련 진료 및 상담/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을 지원합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노동문제들에 대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무료노동신고센터는 지금 2017년 과로사 / 무료노동 / 미지급수당 없는 '서울디지털단지만들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만 무려 여섯 명이 사망했습니다. 넷마블 세 명, LG전자연구소 세 명……. 매일 야근, 매일 밤샘 하는 '구로의 등대'가 가디, 구디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죽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적인 회사 운영을 요구합니다. 무료노동, 포괄임금계약 행태를 근절해야 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낼 것입니다. 다닐 만한 직장을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 공약을 들여다본다

[대선후보 공약비교] 최저임금, 비정규직 관련 공약



5월9일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민주노총이 각 후보에게 노동공약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현재 각 정당에서 확정된 대선 후보 중 답변서를 보내 온 후보는 <국민의 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민주연합당> 김선동 후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노동공약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질의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답변서를 보내온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후보의 답변서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은 문재인, 유승민 후보의 캠프 공식 사이트, 보도자료, 각종 공식석상 후보 발언 등을 중심으로 정책·공약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시기 차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네 명 중 한 명 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개선해 노동이 존중받고 평등한 사회를 앞당기는 유력한 의제다. 2018년 적용하는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6월 말~7월 초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민생 현안이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달성 시기에 차이가 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 2022년, 김선동 후보는 2018년 즉각 실현을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3월22일 대선후보초청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으나 구체적인 달성 시기와 경로는 제시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철폐·비정규직 권리보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는 핵심 열쇠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관련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공통 점은 ▲비정규직 사용자 유 제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청소, 택배, 학습지 등)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 원칙 사용자성 인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이다.

후보별 차이를 살펴보면,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자 유 제한과 사용자량제 등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법화 등 구체 실천방안은 미흡하다. 27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입법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심상정, 문재인, 김선동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자 유 제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를 통합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사용자 유 제한에 대해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 할 권리·노동 3권 보장

노조 할 권리·노동 3권 보장을 위한 구체 고민을 담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는 심상정, 안철수, 김선동 후보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임기 내 노동자 노조 가입률(조직률) 30%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률 50%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김선동 후보는 노조 가입률(조직률) 50% 달성과 모든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을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과 노사민정의 대타협,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를 언급하지만 노동 3권 분야에 관한 구체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승민 후보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발표하지 않은(노동)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은 3월22일 대선후보초청 토론회 모두 발언, 공식사이트, 보도자료, <시사저널>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 등을 근거로 함. 민주노총 정책질의서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지 않겠다고 알려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약은 홈페이지(3/14 현재) 자료를 참조함.

※ 민주노총은 대선 전 각 정당별 대선후보가 최종 확정된 후 당 차원의 대선공약에 대한 분석을 위해 2차 정책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다.